



분리배출표시지침(안)

2003년 1월부터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부가 표시방법 및 대상을 지정하고 법안정비에 나서고 있어 본지는 환경부가 마련한 분리배출표시지침(안)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법적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은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 분리배출표시 제품·포장재(령 제16조)

표시대상 품목

- 생산자 의무 재활용품목(시행령 제16조 1호 및 제18조 제1호 제2호)
 - 다음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접합·도포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용기 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
 -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의 분류에 의한 음식료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 가공품·알 가공품 및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샘물)
 - 농·수·축산물(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
 - 세제류(표준산업분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비누 및 세제)

[표 1] 용어 정의

다중포장재	여러 겹 또는 여러 개로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성부분이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
복합재질포장재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 접합 등으로 구성되어 용이하게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
일괄표시	다중포장재 등의 포장재에 대하여 주요 구성부분의 한곳에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인접한 곳에 다른 각 구성부분의 "역할 면과 재질표시 문자"를 일괄하여 기재



(표 2) 분리 배출 표시 방법

구 분	다중 포장재	복합 재질 포장재
정 의	여러 개로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성부분이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	2개 이상의 소재, 재질이 혼합, 접합 등으로 구성되어 용이하게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
해 설	여러 겹 또는 여러 개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로서 몇 개인가로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된 것	종이팩에 플라스틱제 입구가 접합되어있거나(쥬스 팩), 종이에 플라스틱을 접합한(우유팩) 재료로 만든 용기와 같이 분리할 수 없거나 곤란한 형태로서 일체로 구성된 것
포장재 예	- 컵 라면 용기 (컵+뚜껑+외장필름+ 스프링클러) - 삼푸 병 (플라스틱 재질의 병+캡+펌프) - 고추장 용기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용기+뚜껑) - 딸기 썬 병 (유리병+캡) - 치약 (튜브+캡) - 드링크 병 (병+캡)	- 우유 팩 (외장종이+내장플라스틱) - 쥬스 팩 (외장종이+내장플라스틱+입구플라스틱) - 각종 캔류 (금속뚜껑+플라스틱 속지)
표시방법	- 분리할 수 있는 각 구성부분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표시불가능 포장재, 무늬 없는 포장재 등의 경우는 「일괄표시」가능 - 분리되는 구성부분이 복합재질인 경우는 가장 무거운 재질표시	- 복합재질포장재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 재질을 표시, 이 경우에도 「일괄 표시」는 자율적으로 가능
일괄표시 예	-	- 일괄표시를 하는 구성부분 한곳에 해당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 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각 구성부분의 “역할 명”과 “재질표시 문자”를 일괄하여 기재함

- 화장품 법에 의한 화장품과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유리병 제외)
- 의약품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제품
- 살충·살균·소독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살균제 및 살충제제조업의 살충제·살균제·소독제로서 금속 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

○ 전자제품 완충재중 합성수지 포장재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품목(시행령 제16조 2호)

- 생산자의무 재활용품목 이외의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

(표 3) 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포장재질	업종	재활용의무생산자	규모
1.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가. 음식료품류·세제류·화장품류(유리병을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의약품류·부탄가스제품·살충·살균·소독제 제조업 및 수입업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업자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수입업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농·수·축산물의수입업자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2. 폴리스티렌페이퍼(PS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포장재	도시락용기·발침접시 등 기타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도시락용기·발침접시 등 포장재의 제조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도시락용기·발침접시 등 포장재의 수입업자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3. 발포합성수지(PSP제외) 재질의 포장재	가. 완충재를 사용한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자제품의 제조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전자제품의 수입업자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
	나. 농·수·축산물 상자 제조업	농·수·축산물 상자 제조업자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비고 : 1. 제1호가목의 음식료품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상의 분류기준에 의한다.

2. 제1호나목의 “농·수·축산물”은 가목에 의한 “음식료품류”을 제외한 1차 생산품을 말하며,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란 농·수·축산물에 자체 브랜드 또는 상표를 부착·표시하여 농·수·축산물을 출하·판매하는 부가가치 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제1호의 합성수지재질의 경우에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포장재에 한한다.

4. 제2호의 경우에는 음식물 등 내용물을 밀봉하지 않고 랩, 뚜껑 등으로 단순포장 하여 출고·판매하는데 사용하는 발침접시, 도시락용기 등과 단순 포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고·판매하는 발침접시, 도시락용 등을 말한다.

5. 제3호나목의 “농수축산물”의 경우 제1호나목의 자체상표를 부착하여 출하·판매하는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기타 농·수·축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발포합성수지 상자를 말한다.

6.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7. “연간수입액”이라 함은 수입항도착가격(C. I. F)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표 4) 분리배출표시 도안 내부 사용 문자(좌) 및 예시(우)

구 분	사용문자(재질표시문자)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금 속	금속, Fe, Al
종 이	종이
유 리	유리



※ 우측 '표시도안'의 내부문자 'PET'는 예시임

표시대상 사업자

- 의무표시 사업자 : 생산자의무 재활용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시행령 별표3(별도 붙임)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의무생산자(규모 미만 사업자 포함)
- 승인표시 사업자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사업자

표시방법

- 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에 한군데 이상 인쇄·각인 또는 라벨을 붙이는 것에 의해 표시함
- 최소 8밀리미터 크기 이상으로 표시함
- 전체의 모양 및 색채와 비교하여 선명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불가능한 경우 밑면, 뚜껑에 표시)
- 다중포장재는 분리할 수 있는 각 구성부분에 직접 표시를 하는 원칙. 다만, 표시불가능 포장재, 무늬 없는 포장재 등이 있거나 직접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구성부분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분리되는 구성부분이 복합재질인 경우 가장 무거운 재질을 표시.
-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을 표시. 이 경우에도 일괄표시 가능
- 수입품의 경우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에 의한 한국어 표시가 있는 경우 그곳에 표시

표시제외 대상 및 적용 예외

- 법령의 표시제외 대상(시행령 제18조)
 - 빈 용기 보증금대상 제품·포장재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조·수입한 제품·포장재
 - 연구기관 및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

- 표시불가능 포장재
 -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이고, 기존의 법정 의무표시 등으로 8밀리미터 이상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포장재
 - 소재,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을 붙이는 것에 의해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식품용기·포장의 적용예외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체에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에 있어 역할명과 재질문자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승인표시 사업자 승인절차 등

- 규칙 10조에서 정한 “분리배출표시 승인 신청서”에 포장재의 견본 등을 첨부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승인 신청함
- 승인신청서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 심사를 거쳐 분리배출표시 승인서를 교부함
-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견본 등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시행시기

- 시행일 : 2003년 1월 1일
- 유예조치 : 시행일 이전부터 제조·수입되는 제품·포장재는 생산공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 분리배출표시 유예
- 재질분류표시(제93-109호), 재활용가능 표(제95-23호)에 관한 고시는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지 